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0. 0. 00.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.
- 2. 피고는 원고에게 금 ○○○원 및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에 금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3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4. 위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1. 피고는 ○○정보신문, 월간○○ 등의 농업관련 월간지 발행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바, 원고는 19○○. ○월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○○. ○. 초순경 퇴직하고, 20○○. ○. ○. 다시 고용되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20○○. ○. ○○.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습니다.

2. 그러나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입니다.



즉, 피고는 원고가 거래업체로부터 광고비 등을 수금하여 피고에게 입금시키지 않고 횡령하였음을 해고사유로 하였으나,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다시 고용되기 이전에는 수금한 광고비 중 합계 금 〇〇〇원을 피고에게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이 있어 이를 시인하고 퇴직한 사실이 있으나 다시 고용된 이후에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왔고 수금한 광고비 등을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및 영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광고수주 및 수금을 방해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.

3. 또한 원고는 ○○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○○. ○○. ○○. 같은 위원회로부터 "부당 해고가 인정되니 원고를 지체 없이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"는 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있고(갑 제2호증 ○○지방노동위원회 명령서), 같은 명령에 대해 피고가 불복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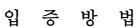
이에 원고는 위 명령 후 피고 업체에 다시 복직하고자 출근을 시도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전화하여 복직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의 복직거부로 지 금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{갑 제3호증 통고서(내용증명우편)}.

4. 한편, 원고는 20〇〇. 〇. 〇.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에 관하여 매월 고정급으로 금 〇〇〇원을 지급 받고, 〇〇정보신문, 월간〇〇지의 정기구독 및 광고수당으로 원고가 수주한 금액의 30% 상당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.(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).

그리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2000. 0. 00.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수주한 위 광고비 및 정기구독료 합계액이 금 000원이므로 원고의 위 근로계약에 따른 월평균 정기구독 및 광고수당은 금 000원(금 000원×1/3)이 됩니다.

따라서 월 고정급과 위 정기구독 및 광고수당을 합하면 채권자의 해고 당시 월 평균 임금은 금 ○○○원이라 할 것입니다.

5.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0○○. ○. ○○.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, 위해고처분일 다음날부터 20○○. ○○. ○.까지 ○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○○○원 (= ○○○원×○개월) 및 그 다음날인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복직하는 날까지매월 말일에 금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사건 소제기에 이르렀습니다.



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1. 갑 제3호증

노동위원회 명령서

근로계약서

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송달료납부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 소 기	멸 시 효 간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), <b>™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타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
## ※ (1) 관 할

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 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,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

MWW Klacor Kla

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 한편, 외국법인,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에 항공 하는 경우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·영업소 또는 당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함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